

# 다문화 사회의 문화 다양성 정착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

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과 법무법인 법승은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상호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문화적, 언어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약내용)** 양 기관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상대방으로부터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, 교환학생 등과 관련한 법무 상담 및 교육 등의 요청한 사항 적극 지원
2. 공동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·물적 자원 교류 적극 지원
3. 기타 상호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·지원

**제3조(업무)**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.

1. 상시 실무적인 업무와 정보 공유를 위하여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은 운영위원을,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박다솜 변호사와 정연재 변호사를 지정한다.
2. 양 기관이 추구하는 공익적 및 영속적인 가치의 연대의 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의 정보와 인력의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함에 공감하고, 이를 위하여 상호 인력이 함께 일하는 독립된 기구를 구성하고, 이 기구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3. 각 기관의 대표자는 분기별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, 사업의 제안 및 사업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1항의 실무담당자가 참여하는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.
4. 양 기관의 협력이 합법적인 이익으로 귀속되고, 이 이익이 다시 공동의 사업추구에 투입되도록 하여 스스로 지속 가능한 사업의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.
5.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의 운영 위원과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상호교류하고, 기관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한다.
6. 본 협약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위 제1항의 실무담당자들을 통하여 공유한다.

제4조(성신행) 본 협약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호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한다. 다만, 협약 내용을 추진함에 있어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본 협약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입수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밀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본 협약의 이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협약기간)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협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일방으로부터 협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 하에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7조(기타)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6월 15일



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

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 
원장 김 성 식

김 성 식



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9

법무법인 법승  
대표변호사 이 승 우

이 승 우